

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2. 3. 화순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2. 3. 18

다. 상성일자 : 2002. 3. 18

(제1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종합민원과장 배상국

나. 개정사유

○ 화순군 직제개편에 의하여 과명칭이 "종합민원과"로 변경됨에 따라 과장의 직명을 "종합민원과장"으로 일원화 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과장의 직명을 "종합민원처리과장"에서 "종합민원과장"으로 변경 함.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장현법)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군직제개편에 따라 종합민원과장이 종합민원과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장 직명을 "종합민원과장"으로 일원하기 위함임.

○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견을 거치는 등 개정 설치상의 허사나 상위관련 법 규와의 상충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답변 요지

"생략"

5. 토론요지

"생략"

6. 심사결과

"계 류"

첨 부 :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연립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연립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및 제2항중 “종합민원처리과장”을 “종합민원과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◦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화순군심의회) ① 위원은 위촉 직 위원 5명(외부 전문가 3명, 군의원 2명)과 당연직 위원(총무과장, <u>종합민 원처리과장</u>) 2명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<u>종합민원처리과장</u>으로 한 다. ③ (생략)</p>	<p>제16조(화순군심의회) ① ----- ----- ----- (-----, 종합민원과 장) ② ----- ----- <u>종합민원과장</u> ③ (현행과 같음)</p>